

'12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기본서 중심 상세 해설

- 단권화 RG경찰학 -

※ 정오와 추록이 반영된

단권화 RG경찰학 교재를 중심을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고고 경찰학 교재는 해설 내용을 참고하여 찾아 보기 바랍니다.

★ 9번 ㉔지문의 「경찰복제에관한규칙」 근거를 제외하고 기본서에 지문이 확인되므로
다음 시험을 준비할 경우 지문 단권화를 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1.

① 17P	4.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㉔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07순경>
② 18P	6. 평시, 비상경찰 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시, 비상경찰로 구분한다.
③ 18P	5. 질서경찰, 봉사경찰 ㉔ 형식적의미의 경찰을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 봉사경찰로 구분한다.
④ 15P 17P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㉔ 권한의 책임과 소재를 기준으로 국가경찰로 자치경찰로 분류한다.<09전의경> (2) 실질적의미의 경찰 (나) 범위 → 협의의 행정경찰㉔ + 보안경찰㉔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㉔㉔로 구분한다.)

2

① 31P	2.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시민들은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경찰의 서비스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경찰서비스는 부자나 빈자, 여자나 남자,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01순경> 위반 사례 ① 편들기 금지 위반 유형 → 친구나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① A지역과 B지역에 대한 순찰근무를 부여받은 김순경이 B지역에 친척이 산다는 이유로 순찰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경우<02승진> ② 음주단속을 하던 A경찰서 직원이 B경찰서 김경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07순경> /■ 운전자가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자 단속하지 않았다. ② 해태와 무시 → 해태와 무시는 특정 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① 전과자가 범죄피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03경간> ② 강도신고를 받고도 평소에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 하지 않았다. ③ 김편파 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 /★ 순찰근무중 달동네 가려하지 않고 부자동네만 순찰 → 공공신뢰확보(×)<07순경>
②	4. 협 동

32P	※ 모든 통치기구들에 타당한 전체적 목적은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므로 각 통치기구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협력의무는 대외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위반 사례 ① 역할한계의 오류 → 외부적 협동의 위반에 해당한다. 예) 형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려 혼내기 까지 한다. ② 내부적 협동 위반 → 형사계 김 형사는 탈주범 S가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내부적 협동위반에 해당한다.)
③ 31P	3. 공공의 신뢰 확보 ※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을 신뢰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신뢰하며, 사익을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07경간> ① [자력구제 대신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한 법인체포]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잉진압 없는 필요최소한의 강제력 사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시민들을 위해 신뢰에 합당한 방식(비례원칙등 준수)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02승진> 즉,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02순경> / ★ 경찰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x 냉정 객관자세에 연결)<02순경>
④ 31P	1.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 ※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① 개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다. 법집행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②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3.

㉠ 97P		훈 령	직무명령
	기본적 성격	경찰기관에 대한 명령이다.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령이다.
	발령자·수명자	상급경찰관청의 하급경찰관청에 대한 명령이다. ∴ 훈령으로써 하급관청을 지휘할 수 있다.<12경간>	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명령이다.
	구속의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한다.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한다.
	구성원의 변동시 인적 효력범위	경찰기관의 구성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 ★ 훈령의 효력은 발급행정청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x)<02경사>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 직무명령의 효력은 공무원 변동과 관련하여 효력에 변동이 없다.(x)<05,01순경>
	규율범위	하급경찰기관의 직무권한 행사에 대하여 가능하다. / ▼ 훈령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구속할 수 있다.	직무사항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의 일상 생활 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 ▼ 직무명령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일상생활에도 관여할 수 있다.
	포함관계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짐이 보통이다.	직무명령이 언제나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 ▼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05순경>
☛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x)<03경정>			
㉡ 98P		형식적 요건<12경감>	실질적 요건<12경위>
	요건	①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② 하급관청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한 것일 것	①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③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한 사항이 아닐 것 ★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 ★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08순경> / ★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09순경> 심사 ①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권을 갖는다. ②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종거부가 가능하다. ③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복종한 경우 하급관청이 책임을 진다. ③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할 것 ■ 실질적 요건(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 가능 ①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권이 없다. ② 훈령의 내용이 ㉠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 명백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심사가능하고 복종거부 가능하다. ☞ <판례> 직무명령이 위법 내지 불법한 경우에는 이미 직무상의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 ■ 상관이 발한 직무명령이 위법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복종의무가 없다.<05순경>
㉠ 98P	협의의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야 하나,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도 발해질 수 있다.<01순경/11경간/12경감> 주로 장기간, 일반적 지휘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41P	㉠ 번 해설 참고 직무명령의 일반적 요건 ① 직무명령의 의의 : 상관이 직무에 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② 범위 / ★ 직무집행에 관계되는 것만 해당한다.(×) ㉠ 직무상의 명령에는 직무집행에 직접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장 등도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의 사생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식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두나 서면의 어느 형식에 따라도 무방하다.

4.

㉠ 142P	제26조(검직허가) ← 상대적 금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07승진>		
㉡ 143P	■ 국가공무원법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12경위>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07승진> / ■ 외국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거나 영예스러운 직함(예) 작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함 / ★ 외국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을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143P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12경간> / ■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증수죄를 구성한다.		
㉣ 138P	제복 착용권		■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 및 무기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복 착용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무기	휴대	
	장구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무기사용)에서 무기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08경간/05,06순경>
		사용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에서 장구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5.

① 152P	박스 첫째 칸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합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② 152P	박스 셋째 칸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년 1차 순경)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이상 5명이하로 구성한다. (x)<12경간>
③ 151P	징계령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12경간>
④ 153P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6.

① ② ④ 149P	파면 ① 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공법 제33조 7호). 경찰공무원으로는 채용 불가하다.(경공법 제7조 7호) /■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함 /★ 파면이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된 자는 5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x) ② 파면의 경우 5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의 2분의1(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상관없이 1/2을 감액한다. /★ 파면은 공무원관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x)<02순경/03승진>
	강등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11순경> ● 강등은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유형간 차이보다 지나치게 커서 효과적인 징계목적 달성이 어려워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감봉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감봉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2분의 1이 감액된다.(x)<07경간> ■ 감봉과 정직은 1월~3월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12경간>
	견책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150P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승진후보자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된다.

7.

㉠ 201P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2경위> <table border="0"> <tr> <td>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td><td>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td></tr> <tr> <td>3. 경박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td><td>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td></tr> <tr> <td>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td><td>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td></tr> </table>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박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박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208P	제9조(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개정 1996.8.8, 1999.5.24>						
㉢ 202P	제3조(불심검문) ④ [동행전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 현장에서 질문할 때에는 달리, 동행 요구시에는 별도로 '경찰관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 대상자를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 줘야 한다.(×)<06순경> /★ 신분증 제시, 소속, 성명 및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임의동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07순경>						
㉣ 210P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사용사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 모든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 (×)<03승진> ★ 사형·무기 단기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방지(×)<07승진> ■ 불법집회, 시위의 경우에 사용가능하다.						

8.

㉠ 158P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다. (다만, 전경대의 대원 중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전경포함)은 그의 소속에 따라 경찰청, 각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다.<12경감>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11순경,12년2차>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09순경>
㉡ 159P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59P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의견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08,02순경>
㉣ 159P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겸직금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1순경>

9.

㉠ 122P	경찰공무원법 제3조(경과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에 구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9P	제10조(시보임용)<12순경> ☞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12순경> 즉,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만료되는 날 아님]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적용대상 :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 시보기간 : 1년(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이 안된다.) ㉢ 정규임용 : 시보기간 만료된 다음날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 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견책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11순경>
㉢	기본서에 없고, 카페 실무1자료실 27번 글을 가지고 해설합니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2.1.26]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2012.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35P 127P	제21조(당연퇴직) [협의의 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 [제6호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03순경>

10.

① 248P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구분)<12경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I 급비밀·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로 구분한다. 1. [I 급 비밀]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 급비밀로 한다./★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x)<04,03 순경> 2. [II 급 비밀]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 급비밀로 한다. 3. [III 급 비밀]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I 급비밀로 한다./★ 3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x)<01승진>
② 249P	제10조(분류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x)<12경간> ①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II 급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04순경> ② [독립분류의 원칙]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독립분류의 원칙) /■ 상급부서의 지시문서가 2급이라고 해서 하급부서에서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응신문서)에 대하여 2급으로 비밀등급 분류하는 경우? 독립분류원칙 위반/★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x)<12경간> ③ [외국비밀 준중의 원칙]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248P	■ 보안업무규정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I 급비밀 및 암호] I 급비밀 및 암호 자체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4. 각 부·처의 장 5. 국무원장 6. <삭제> 7.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 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10. 검찰총장 /★ 경찰청장(x)<08경간/07승진> 1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 검찰총장, 국무원장, 경찰청장은 I 급비밀 취급인가권자이다.(x)<12경간> ② [II 급 및 III 급비밀] II 급 및 III 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I 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경찰청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④ 251P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려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11.

甲경갑	제2조(정의)<12경간>
乙경위 369P	4.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가출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10경사> 3.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은실종아동등을 말한다.<12년2차>
丙경사	제2조(정의)(12.2.5시행)

丁경장 367P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2경간> 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x) <11순경>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11순경>

12.

① ② ③ ④ 489P	복합 기능적 활동 <04경장>	① 경비경찰은 예방과 진압을 아울러 수행한다. ② 사후 진압적 측면이 있지만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진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범죄의 진압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사후적인 부대활동이다.(x)<01순경> ③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범죄의 진압'은 여기서 「범죄의 진압」이란 주로 집단적 범죄가 막 일어나려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이미 발생된 뒤에도 그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하므로, 그 내용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 양자의 모두에 중복된다.
	조직적인 부대활동	①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12경감> ② 경비경찰은 개인단위로 활동하기보다는 보통 부대단위로 경비사태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대처 (cf : 수사는 개인적 활동)한다. ③ 부대활동으로서 하향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으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특징 ➡ 하향적 부대활동을 행한다./★ 상향적 이다.(x)
	현상 (現狀) 유지적 활동	①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다. ② 소극적 질서유지작용이지만, 이는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 예방과 진압을 아울러 수행하는 복합적 기능 가지고 정태적·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x)<02순경>

13. 505P

(3) 특별재난지역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03경장>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4.

① 590P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19세 미만 (x)<12년2차>
② "	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말을 못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x) /■ 귀머거리(듣지 못하는 사람)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x)<04순경/05경위>
④ "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1종 특수운전면허 취득 가능연령- 만 20세 이상(x)<03경장>/★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x)<11순경>

15.

① 584P	【이유】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의에 따라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따라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12경감/순경>
② 583P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583P	[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④ 585P	판례 【악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뜻 【판시사항】 <2010도11272>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악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악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범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악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2년 1차 순경>

16.

㉠ 703P	제2조(정의)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집회 후 행진하는 경우, 또는 행진만을 개최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 707P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Q 신고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최장기간은? 29일간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옥외집회·시위 신고서을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두 곳 이상 지방청-경찰청장에 신고 (×) <11경감>
㉢ 712P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해당 경찰관서의 장 아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1경감/12순경> 예 A노조가 종로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청이 재결한다.<02순경> /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수령한 후 72시간 이내에 하여야한다.(×)<07순경> 행정소송과 관계 ①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의 피고는 해당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다. 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재결정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정을 발송하여야한다.<07승진> ❑ 재결정은 이의신청 접수 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재결정을 할 수 있다.(x) <11순경>
--	---

17. 696P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설정된다.

18.

㉠ 758P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은?
㉡ 765P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09,02,12경간,순경> / ★ 참고인이 3회 이상 소환 불응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x)
㉢ 764P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2경간>
㉣ 765P	제20조(공소보류)<09순경>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 공소보류기간은 해당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따른 차이가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09/12순경> /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x)<05경위>

19.

① 769P	제8조(청구의 방법) ① 제7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안관찰 처분의 청구 ㉠ 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 처분의 청구를 한다.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청구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를 하는 때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771P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x)<05순경>
③ 770P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11순경> / ★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x)<02승진,12년2차>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경간>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770P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20.

① ② ③ ④ 843P	Red Notice (국제체포 수배서)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Yellow Notice (기출인 수배서)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Black Notice (사망자 수배서)	사망자의 신원확인 목적으로 발행되며, 사망자의 사진, 지문, 치아상태 등 자료를 수록
	Orange Notice (Security Alert)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Purple Notice (Modus Operandi) (범죄수법 수배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